『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7-108

제출일자 : 2017.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내용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의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나. 위 치: 거창읍 수남로 2193-40

다. 주요시설

구 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라. 위탁대상 사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마.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242,184천원(연간 80,728천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 현재 관리현황

○ 위탁기관: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 위탁기간: 2014.12.19. ~ 2017.12.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나. 그간추진현황

○ 전수관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2017. 7월

다. 향후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10월초

○ 위·수탁계약 체결: 2017. 12월초

라. 위탁운영 계획: 따로 붙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관리 계획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의 관리위탁기간의 만료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1 전수관 운영 근거

-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2 기본현황

- ○ 시 설 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 전수관
- ○ 위　　치: 거창읍 수남로 2193-40
- ○ 인력현황

직위	이사장	사무국장	직원
인원/명	1명	1명	1명
직무	대표 (상근)	총괄업무, 기획업무	실무

- ○ 시설현황

구 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수탁협약일로부터 2020. 12. 19. (3년간)

○ 위탁대상 업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 수탁기관 모집 : 수의계약

※ 문화재보호법 84조: 문화재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위탁조건

-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을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해 홍보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전문성 있는 단체
- 전수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위탁 비용으로 사용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하며 관리물품 현황은 매년 보고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공익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검토하여 선정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10월초

○ 위・수탁계약 체결: 2017. 12월초

5 기대효과

○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무형문화재 홍보 및 효율적 관리운영 기대

관 계 법 령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전수교육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